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00
----------	-------

발의연월일 : 2025. 7. 21.

발 의 자 : 임호선 · 윤준병 · 문대림
정준호 · 이상식 · 임미애
조계원 · 김문수 · 이원택
최혁진 · 김승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운전자로 제한적이고 업무 수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모범운전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운전자가 가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 충원되거나 자원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복장 및 장비, 보험, 보조금 등이 있지만,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업무 수행 중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장비 보관과 휴식에 애로사항이 있음.

이에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면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

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3호 중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

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

다. 10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자동차의 운전자

제5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2. (생략)	1. ~ 32. (현행과 같음)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	3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
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
<신설>	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
<신설>	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
	다. 10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자동차의 운전자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u>
---	--